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2월 12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4.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상정, 소위심
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

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③ ~ ⑥ (생 략)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자 2. 3.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4. (생 략)	<u>날부터 30일 이내</u>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u>30일 이상</u> <u>휴업</u> _____ <u>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u> _____.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수수료) _____ _____ _____. 1. _____ <u>같은 조 제2항제1호</u> _____ _____ 2. 3.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_____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제2항제1호</u>를 _____ _____ 3. 4.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략) ③ (생략)	② _____ _____ _____. 1.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_____ _____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1조제2항은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ii) 휴업, iii) 폐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사항을 제21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면서, 이 중 ii)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바꾸어 30일 미만의 단기 휴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¹⁾.

휴업은 일정 분야의 사업자가 사업주 및 구성원의 건강 문제 등 개인적 사유, 시설관리 등 영업상의 사유, 자연재해 등 외부적 요인, 비수기와 같은 경영상의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신고업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휴업신고 조항은 해당 업종의 영업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임.

1) 이하 안 제24조, 제45조, 제48조는 제21조제2항의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맞춤임.

그런데 현행법은 휴업 시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휴업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고말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미만으로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다소 번거로운 신고 행위를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반면, 30일 미만의 휴업에 대한 신고를 집계할 필요성은 중요 사항의 변경, 장기 휴업, 폐업 등에 비해 크지 않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방역위생관리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독업자)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면제해도 제도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8,765개사이고, 최근 4개년간('21~'24) 연평균 177건의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30일 미만 휴업건수는 연평균 2.75건으로, 실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및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다수의 입법례에서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며,

사업자 단체이면서 신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도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탄력적 영업활동 및 신고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24조제2항 중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제21조”를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2항을”을 “제21조제2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2항을”을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 ⑥ (생 략)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30일 이상 휴업 _____

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3.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

----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수수료) -----
-----.

1. ----- 같은 조 제2항 제1호-----

2.·3.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제1호를 -----

3.·4. (현행과 같음)

② -----
-----.

1.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

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③ (생 략)	<u>호를</u> _____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